

● 제301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
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(의안번호 : 2409)

2021. 6. 2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2409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1. 05. 25.
- 다. 회부일 : 2021. 06. 0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1)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을 목적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·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설치·운영 중인 시설로서,
- 2)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

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

2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 근거

-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, 제24조 제3항(어린이집 운영기준 등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추진 필요성

- 직원 자녀인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·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유지가 필요하고,
- 특히, 영유아의 보호 및 건전한 교육·양육을 추진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장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보육여건 조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함
- 이를 위해, 다양한 보육 경험을 갖추고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

다. 시설개요 및 현황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
- 소재지 :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(주암동)
- 시설규모 : 354.11m²(지하1층 보일러실, 지상1층)

현 황	영·유아용					교직원용	학부모용	기타
	보육실	유희실	상담실	화장실	놀이터	교사실	상담실	교재 교구실
시설수	5	1	1	3	1	1	1	2

○ 보육정원 : 48명(현원46명)

('21.4.30. 기준)

구 분	계	만 0세	만 1세	만 2세	만 3세	만4~5세
현 원	46	2	7	11	10	16

○ 종 사 자 : 11명(시설장1, 보육교사7, 취사원1, 보조교사2)

○ 소요예산 : 252,516천원('21년 기준, 보육료 수입 등 별도)

- 인건비 : 223,148천원

- 운영비 : 29,368천원

○ 민간위탁 추진 현황

- 1차위탁 : '11.4.5~'12.7.31[수탁자: 이강재, 신규위탁(공모)]

※ 수탁자 개인 사유로 연구원 임시 운영 : '12.8.1. ~ 10.31.

- 2차위탁 : '12.11.1~'15.10.31[수탁자: (사)그린티처스, 재위탁(공모)]

- 3차위탁 : '15.11.1~'18.10.31.[수탁자: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, 재위탁(공모)]

- 4차위탁 : '18.11.1~'21.10.31.[수탁자: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, 재계약]

○ 시설 위치도 및 전경



라. 위탁내용

○ 위탁기간 : '21.11.1. ~ '24.10.31.

○ 위탁업무

-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 및 관리
- 보육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 관리 및 급간식 위생 관리
- 어린이집 물품 및 회계 관리
- 기타 아동 보육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영유아보육법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민간위탁 채위탁 추진계획 수립('21.4.19.)

○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'적정' (2021.5.17.)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민간위탁 추진 개요

- 본 동의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¹⁾에 따라 추진하고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.
- 본 동의안은 인적·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음.

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방안

- 위탁기간 : 3년 ('21.11.01. ~ '24.10.31.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위탁금액 : 252,516 천원 ('21년 기준)
- 위탁 사무
 - 어린이집 보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 및 관리
 - 보육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 관리 및 급·간식 위생 관리
 - 어린이집 물품 및 회계 관리
 - 기타 아동 보육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

1)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2 민간위탁의 필요성 검토

1)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필요성 검토
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「남성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)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·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(이하 “직장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-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.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위탁보육”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0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·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 다만,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(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)
2.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·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.

-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상시 여성근로자 수는 173명, 상시근로자수는 293명으로 법적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, 종사자의 자녀 양육 환경 지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.
-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정원 48명 가운데 직원 자녀는 16명, 지역자녀는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의 33%가 직원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1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음.

<표>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보육아동 현황

(2021. 5월말 기준)

연령	현원	직원 자녀	지역 아동
계	46	16(35%)	30
만0세	2	0	2
만1세	7	1	6
만2세	11	7	4
만3세	10	2	8
만4세	12	4	8
만5세	4	2	2

2)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

-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은 2011년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되어 왔음.

<표>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수탁현황

위탁기간	수탁기관명
2011.04.05. ~ 2012.07.31.	이강재, 신규위탁 ※ 수탁자 개인사유로 연구원에서 임시운영 : '12.8.1~10.31.
2012.11.01. ~ 2015.10.31.	(사) 그린티처스
2015.11.01.~ 2018.10.31.	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
2018.11.01.~2021.10.31	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

-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 및 육아교육에 전문성과 인력, 장비 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.

3 종합 검토 의견

-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종사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육아 보육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.
- 또한 어린이집 운영은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,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민간에 위탁한다는 본 동의안의 타당성 역시 인정된다 하겠음.
 -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식은 전문운영 기관 위탁 비율이 49.0%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, 또한 선정 이후에도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임.